

검 사 명 령 서

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	대상 제품 : 쿨란트로
	대상 국가 : 태국, 베트남
	대상 해외제조업소
영업자	영업의 종류
	영업소 명칭
	소재지

사유 : 검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높아 검사명령 기간 1년 연장(재지정)

기간 : 2020. 8. 30. ~ 2021. 8. 29.

검사항목 : 농약 5종(클로르피리포스, 사이퍼메트린, 아족시스트로빈, 프로클로라즈, 피프로닐)

* 기준 :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적합

시험법 :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의 시험법을 따름

기타 : 「식품·의약품 분야 시험·검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
* 검체채취는 시험·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명령합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2020 년 8 월 13 일



유의사항

1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려는 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시험·검사성적서(검사로 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)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.